

[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6-51호]
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지시

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17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



1. 건 명 :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지시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 명단) 참조
4. 공고기간: 2026. 9. 17. ~ 10. 7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(전화 063-450-060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9. 17. ~ 10. 7.)

연 번	사업장명	법인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
1	주식회사 어반테크	211111 -0008796	전북 군산시 진포안1길 12-1 2층(수송동)	행정처분(경고) 사전통지	○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경고) 사전통지 -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26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미제출 [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(사업보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(사업보고) 위반] ○ 처분 내용 - 26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경고(1차)	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반송함 수거
				시정지시	○ 26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- 26. 10. 6.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※ 시정지시 미이행시 파견법 제46조제5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※ 폐업 시에는 폐업신고서 제출	